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

제 정 2009. 03.
개 정 2012. 03.
개 정 2012. 06.
개 정 2016. 12.
개 정 2018. 02.
개 정 2019. 0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학칙 제72조에 의거 교수학습개발센터(이하 '센터'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•학습에 관한 프로그램 조사, 개발 연구(개정 2018.02.08.)
2. 교수자 역량진단 수행 및 지원
3.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환류(개정 2018.02.08.)
4. 기초학생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 개발 위한 요구 조사 및 진단검사 수행(개정 2018.02.08., 2019.02.18.)
5. 기초학생학습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, 중간 점검, 자체평가(개정 2018.02.08., 2019.02.18.)
6. 온라인 강의 컨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
7. 교수학습지원과 관련한 교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
8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 및 역할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, 센터장은 본교의 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보하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센터의 사업 운영을 위해 초빙교수 등 전문가를 전문 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센터는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지원팀, 학생 기초학습역량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팀, 온라인 및 원격 강의 지원을 위한 매체제작지원팀을 두며, 주임교수, 연구위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9.02.18.)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하되, 센터장, 부센터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을 당연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전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규정·내규·지침 등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4. 교수 및 학습 프로그램 담당 전문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
5. 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점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5조(예산과 회계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및 대학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.

② 교비지원: 대학은 매 차기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 한다.

③ 국고지원: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진행 할 경우 사업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우선 지원 한다.

④ 기타: 부득이 초과 예산이 발생 할 경우 대학 예산편정 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.

⑤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정의 폐지)「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」으로 통합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.

1.「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」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